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639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출일자 : 2025년 03월 31일
4. 회부일자 : 2025년 04월 02일

II. 제안이유

-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규제 관련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 가. ‘규제총괄관’의 자격기준 등 위촉에 관한 사항
- 나. ‘규제총괄관’의 업무, 수당, 해촉 등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의 문구 정비 등

Ⅳ.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개정조례안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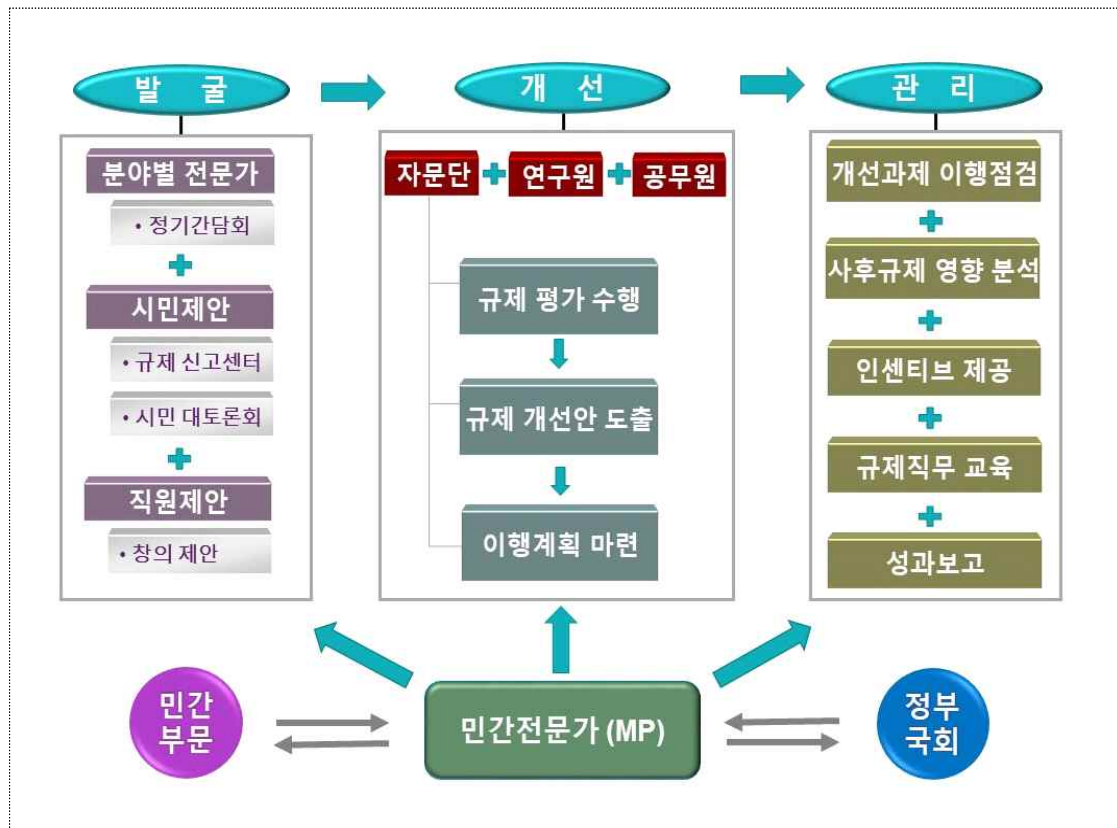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관련 규정의 일부 문구를 정비하고, 규제 관련 민간전문가인 ‘규제총괄관’의 위촉 근거와 자격 기준, 업무, 수당, 해촉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됨.

2. 규제총괄관의 신설 경위 및 기능

- 서울시는 제2기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라 촉발된 각국 간의 관세전쟁 여파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등 국내외적 경기침체 요인으로 인해 수출과 국내소비에 어려움이 예견되자 시장 주재의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규제개혁’을 제시하였음.
- 이후 서울시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2025.1.14.)하고, 서울시정에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하는 ‘시민 집중신고제’와 ‘규제철폐 100일’을 운영(2025.1.3. ~ 4.12)하여 123건(4.12.기준)에 이르는 규제철폐안을 발표하였음.
- 이와 함께 서울시는 규제철폐안에 대한 후속 조치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규제철폐 관련 사무를 총괄 중인 기획조정실 내에 3급 상당의 “규제혁신 기획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제출하였음.
- 또한 신설되는 규제혁신기획관에 법무담당관에서 담당하던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관련 업무를 이관받고, 불필요한 규제의 발굴-개선-관리에

이르는 규제개혁 업무의 전 과정에 대한 자문과 민간 및 정부·국회에 대한
 가교 역할을 하는 민간전문가인 “규제총괄관”의 위촉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임.

< 규제개혁 업무 흐름도 >



3. 주요 내용별 검토

(1) 규제총괄관 규정 신설에 따른 총론 규정 개정 등(안 제1조~ 안 제3조)

- 안 제1조는 종전의 “규제시책”이라는 용어를 “규제정책”으로 하고,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는 조례의 목적에 “그밖에 서울
 특별시 규제개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음.

- 또한 안 제2조와 안 제3조를 신설하여 각각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기본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u>규제시책</u> 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u>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u>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규제정책</u> ----- -----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사항과 그밖에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에 필요한 -----.
<신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를 따른다.
<신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규제를 조례·규칙 등에 규정하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를 따라야 한다.

- 일반적으로 정책이란 공공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결정한 행동방향을 의미하고, 시책이란 그러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또는 수단과 같은 하위 개념을 뜻함.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이 “규제시책”을 “규제정책”으로 변경한 것은 동 조례가 심의·조정·정비하는 대상이 종전보다 확대된 것을 의미하며,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 역시 관련 용어를 “규제정책”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참고한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서울시는 법 제3조제3항¹⁾에 따라 설치한 규제심사기구로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규제의 등록·공표, ▶규제

1)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동 조례에 “규제총괄관”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그 밖에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한 것임.

- 그리고 이러한 추가 사항으로 인해 위원회 관련 조문의 해석에 혼란이 없도록 일반적인 위원회 조례의 입법례와 달리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및 기본원칙(안 제3조)을 신설하고 있음.
- 다만 안 제3조(기본원칙)는 시장이 규제를 조례 또는 규칙에 규정할 경우에는 법에 따른 규제 법정주의(법 제4조), 규제의 원칙(법 제5조),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법 제5조의2)을 따르도록 한 것이나, 법에서 이미 이러한 원칙이 명시되어 있고, 그 밖에도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면 다소 불필요해 보임.
- 한편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조례의 목적과 성격을 확대한다면 조례명 역시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기본 조례” 등으로 변경하거나 동 조례 외에 별도의 규제개혁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법령 및 조례의 체계정당성²⁾ 확보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2) 규제개혁위원회 관련 규정의 문구 정비(안 제4조~안 제12조)

-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는 규제개혁위원회 관련 규정의 문구를 보다 명확히 정비한 것임.

2) 개별 법률규정이나 개별법은 다른 법률규정 및 법률과의 관계에서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되어야 한다는 원칙

- 먼저 안 제4조는 규제총괄관 관련 규정이 조례에 추가됨에 따라 규제개혁 위원회와 규제총괄관의 설치 근거가 혼동되지 않도록 조 제목을 “규제 개혁위원회 설치 등”으로 변경하였음.
- 다음으로 안 제5조는 서울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구성시 기준이 되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를 따르도록 인용 조례를 명확히 하고(제1항), 시장의 약칭(제2항)과 어색한 문구(제3항)를 정비한 것임.
- 그리고 안 제6조는 현행 조례에 누락된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을 추가한 것이며, 안 제7조는 동 위원회가 민간인과 행정 1부시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음에도 직무대행의 선임 조건과 주체가 명확하지 못했던 점을 보완한 것임.
- 이 밖에 안 제11조는 동 위원회 간사 관련 규정의 어색한 문구를 정비 하고, 안 제12조는 동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의 수당 지급 근거를 보다 명확히 명시하였음.
- 이상의 개정 사항은 인용조례를 명시하고, 문구를 정비한 수준으로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3) 규제총괄관 관련 규정의 신설(안 제13조~안 제17조)

- 안 제13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규제총괄관의 위촉 근거와 업무, 임기, 수당,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임.
- 먼저 안 제13조는 규제총괄관의 위촉 근거와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격기준 중 제1호와 제2호는 정부(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규제혁신

전문가 채용 기준을, 제3호부터 제7호까지는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제개혁 위원회 위원 자격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개 정 안
제13조(서울특별시 규제총괄관 위촉)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의 전략수립과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규제총괄관”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민간(기업·언론·연구기관·교육기관·시민단체 등)에서 규제 관련 업무에 전문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규제 관련 석사·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규제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5. 사회·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
7.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한편 규제총괄관 위촉 근거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전문가 조례”)를 통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전문가에게 서울시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의 자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그동안 서울시는 ▶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사업’ 수행을 위한 총괄계획가, ▶서울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자문 및 감정을 수행하는 고문변리사, ▶「건축기본법」에 근거한 총괄건축가 등을 위촉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자문 등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법리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규제총괄관의 자격기준 중 민간인 출신에게 적용되는 제1호 및 제2호는 정부 규제혁신전문가에 비하여 경력기준이나 학위기준이 하향되어 있으며, 퇴직공무원의 자격기준(제6호)은 정부 기준보다 필요 직급은 상향되었으나

구체적인 경력기준이 미흡함.

< 정부-서울시 규제 관련 민간전문가 자격기준 비교 >

정부 규제혁신전문가 자격기준	서울시 규제총괄관 자격기준
◦ 민간경력 기준 - 민간(기업·언론·연구기관·시민단체·교육기관 등)에서 <u>규제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u>이 있는 자 - 규제정책 관련 <u>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u> 관련 직무 분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 공무원 경력 기준 - <u>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u> 중앙부처 퇴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포함)으로 <u>관련 직무분야에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u>이 있는 자 - <u>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u> 지방자치단체 퇴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포함)으로 <u>관련 직무분야에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u>이 있는 자	◦ 민간경력 기준 - 민간(기업·언론·연구기관·교육기관·시민단체 등)에서 <u>규제 관련 업무에 전문적으로 근무한 경력</u>이 있는 사람 - 규제 관련 <u>석사·박사학위 취득 후</u> 관련 분야에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 경력 기준 - <u>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u> 있었던 사람

- 또한 제5호의 ‘사회·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규제 관련 전문가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규제총괄관의 자격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안 제14조는 ▶규제총괄관의 업무범위, ▶규제총괄관에 대한 업무자료 제공, ▶직무상 획득한 정보·자료의 제3자 누설·제공, 목적 외 이용 금지, ▶규제개혁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대한 의견 요청 근거, ▶민간전문가 조례에 따른 결과 보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개 정 안
제14조(규제총괄관 업무 등) ① 규제총괄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주요 규제개혁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자문 2. 서울특별시 기존규제에 대한 규제정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자문 3. 불합리한 규제 발굴·검토·개선에 관한 자문 4. 서울특별시 규제입증책임제도와 관련한 자문 5. 규제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에 관한 자문

6.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자문
 7. 규제개혁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자문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 ② 시장은 규제총괄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규제총괄관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 ④ 규제총괄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규제총괄관은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 중 규제총괄관의 업무범위는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와 비교할 때, 상당 부분이 유사한 문제가 있음.

< 규제개혁위원회-규제총괄관 간 업무범위 비교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총괄관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서울특별시 주요 규제개혁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자문 2. 서울특별시 기존규제에 대한 규제정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자문 3. 불합리한 규제 발굴·검토·개선에 관한 자문 4. 서울특별시 규제입증책임제도와 관련한 자문 5. 규제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에 관한 자문 6.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자문 7. 규제개혁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자문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 또한 동 조례는 이미 규제개혁위원회가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규제총괄관에게 규제개혁위원회나 실무위원회에 별도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바, 규제총괄관과 규제개혁위원회 간의 상하관계나 권한, 역할이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음.

- 더욱이 규제총괄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는 2022년 9회, 2023년 8회, 2024년 7회가 개최되면서 매우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 올해에도 이미 2회 개최되어 4건의 안건을 처리한 바, 규제총괄관이 상시적인 자문을 위해 위촉된다고 하더라도 기능이 중복된다는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기 어려움.[참고자료]
- 아울러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총괄관 모두 신설되는 규제혁신기획관의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지만 규제혁신기획관 역시 서울시 규제개혁 관련 업무의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설치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옥상옥 구조로 인해 규제개혁 관련 기능과 절차가 중복되어 업무상 혼선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음.
- 다음으로 안 제15조는 규제총괄관을 임기 2년의 비상근직으로 하고, 연임 근거를 명시했으나 민간전문가 조례는 1년 단위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6조는 규제총괄관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대한 근거 규정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그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민간전문가 조례는 민간전문가의 자문료를 일반자문과 특별자문으로 구분하여 일반자문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고, 특별자문은 일반자문의 150% 이내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개정조례안에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제17조는 규제총괄관의 해촉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1호를 제외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는 이미 제6호에서 인용한 민간전문가 조례 제12조의 위촉 해지 사유에 포함됨.

< 개정조례안-민간전문가 조례 간 해촉사유 비교 >

개정조례안	민간전문가 조례
1. 규제총괄관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규제총괄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규제총괄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위촉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직무와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체·정신상 이상으로 위촉 기간 내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따라서 해당 조항은 “규제총괄관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거나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위촉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로 간략히 규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4. 종합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규제개혁 전담 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 설치와 연동하여 민간전문가인 규제총괄관의 위촉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국내외 경제 불안정에 대응하여 규제개혁을 민생경제 회복의 핵심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서울시의 정책적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동 개정조례안은 규제총괄관의 자격기준과 업무범위를 규제개혁 위원회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능 중복 및 역할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특히 규제총괄관이 규제개혁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자문기능을 부여받은 민간전문가에게 심의 기능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규제개혁위원회와의 권한 관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법령 체계 내의 위계를 훼손할 수 있음.
- 또한 규제혁신기획관 역시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기관임에도 유사 기능이 중첩되면서 행정기구와 자문기구 간의 기능배분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신중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입법조사관	연락처
최범준	02-2180-8056

[참고자료]

□ **2025년도 규제개혁위원회 개최현황** ('25.3.31. 기준)

○ 총 2회 개최, 안건 상정 4건(규제심사 3건, 보고 등 1건) - 원안의결 3

회차	일자	심의 안건	자치법규 등	부서	결과
제193차	2.27.~2.28. (서면)	- 부동산 유관부서의 부동산 취득제한 범위 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청렴담당관	원안 의결
		- 유어행위 제한대상 및 시기 규정 - 유어행위 금지지역 확대 및 신규지정	한강본류 내수면 유어 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 고시	미래한강본부 환경수질과	원안 의결
		-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대상 행위 규정 -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기간 규정 -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지역 규정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고시	자연생태과	원안 의결
제194차	3.18.~3.19. (서면)	-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 가점 추천 대상자 선정	-	법무담당관	기타

□ 2024년도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실적

○ 총 7회 개최, 안건 상정 10건(규제심사 7건, 보고 등 3건) - 원안의결 7

회차	일자	심의 안건	자치법규 등	부서	결과
제186차	3.19.~3.20. (서면)	- 조합의 심사위원회 구성 의무 및 설계자 공고 시 최소 공고기간 설정 - 홍보가능한 홍보물을 심사용으로 기재출된 홍보물로 제한 - 부정홍보행위 1회 이상 적발 시 입찰무효 - 부정당업체 및 입찰무효의 건 공개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 사업 설계자 선정기준	주거정비과	원안 의결
		-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 가점 추천 대상자 선정	-	법무담당관	기타
제187차	4.25.~4.26. (서면)	- 가설건축물 존차기간 연장횟수 상한(1회) 설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건축기획과	원안 의결
		- 대관시설 사용허가 규정 - 시설 대관자의 원상복구 및 변상책임 의무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 플라자 등에 관한 관리 운영 조례	디자인정책과	원안 의결
제188차	6.26.~6.27. (서면)	-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1차책임 및 즉시 재시공의무 부여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예규안	기술심사담당관	원안 의결
제189차	8.27.~8.28. (서면)	- 도매시장법인 최저거래기준 신설 및 중도매인의 최저거래기준 강화 - 강서농산물 도매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의 상한수 하향 조정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농수산유통과	원안 의결
		- 어울림플라자 대관시설 허가 및 허가취소 규정 - 시설 파과훼손 시, 대관자에게 원상회복 의무 부과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장애인복지정책과	원안 의결
제190차	9.10.~9.11. (서면)	-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 가점 추천 대상자 선정	-	법무담당관	기타
제191차	10.22. (서면)	- 2024년 서울시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결과 보고	-	법무담당관	기타
제192차	12.5.~12.6. (서면)	- 연면적 3만㎡이상 비주거 건물에 재생열 설치 의무 기준 신설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축기획과	원안 의결

□ 2023년도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실적

○ 총 8회 개최, 안건 상정 11건(규제심사 8건, 보고 등 3건) - 원안의결 8

회차	일자	심의 안건	자치법규 등	부서	결과
제178차	3.3.~3.7. (서면)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의 가중부와 기준 신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건축기획과	원안 의결
제179차	3.21.~3.23. (서면)	-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 가점 추천 대상자 선정	-	법무담당관	기타
제180차	4.17.~4.19. (서면)	- 금주구역의 지정 :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금주구역 지정고시의 대상이 되는 범위 설정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스마트건강과	원안 의결
		- 혁신성장시설을 설치한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에 대하여 120% 범위 내서 용적률 완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도시계획과	원안 의결
제181차	6.26.~6.28. (서면)	-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 대상이 되는 교통량 감축 활동 축소('나눔카 이용' 항목 삭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 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교통정책과	원안 의결
제182차	8.29.~8.31. (서면)	- 건축물 미술작품의 이전·변경·철거 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 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 전 기금출연계획서의 제출의무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서울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참여 금지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 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디자인산업 담당관	원안 의결
		- 한옥건축양식 비용지원 신청 시 심의도서 및 체크리스트의 제출 의무 - 건축물의 구조부 외벽·지붕·담장·마당·기타 시설물 등에 대한 심의기준	서울특별시 한옥건축양식 비용지원 심의기준 공고	한옥정책과	원안 의결
		- 2023년 상반기 등록규제 정비 결과 보고	-	법무담당관	기타
제183차	9.19.~9.21. (서면)	-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 가점 추천 대상자 선정	-	법무담당관	기타
제184차	11.8.~11.10 (서면)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기준 강화 -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 강화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전부개정고시안	건축기획과	원안 의결
제185차	12.13.~12.15. (서면)	- 시공자의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 제출의무 - 조합의 공사비 검증 의무화 - 개별홍보 행위 1회이상 적발 시, 입찰참가 무효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 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주거정비과	원안 의결

□ 2022년도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실적

○ 총 9회 개최, 안건 상정 15건(규제심사 12건, 보고 등 3건)

- 원안의결 8, 개선권고 2, 의결보류 2

회차	일자	심의 안건	자치법규 등	부서	결과
제169차	2.14.~ 2.16. (서면)	-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구분 청구 및 수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기술심사담당관	원안 의결
		- 서면 임대 매매 계약서 작성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및 지정 대상이 되는 노후 불량 건축물 기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도시계획과	원안 의결
제170차	3.15.~ 3.17. (서면)	-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 가점 추천 대상자 선정	-	법무담당관	기타
제171차	3.25.~ 3.30. (서면)	- 실내형 공개공지의 조성 및 조성요건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 의기준	건축기획과	원안 의결
		- 개방형 발코니 설치비용 완화 적용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 추가			
		- 돌출개방형 발코니의 설치기준 및 삭제비용 완화 규정 신설			
		- 건축물 외장 계획 시 눈부심 방지 내용 추가			
		-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계획 및 외부창호 설치 기준 신설			
		- 서울시 거주기간 관련 배점 기준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주택정책과	원안 의결
제172차	4.27.~ 4.29. (서면)	-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련 설비 등을 설치한 경우 용적률 완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도시계획과	원안 의결
제173차	7.8.~ 7.12. (서면)	- 서울시 공무원 유관부서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부동산 신규취득제한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부동산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조사담당관	원안 의결
		- 직무 관련 신규부동산 취득 시 제한대상자 등에 대하여 6개월 이내 자진매각 요구			
		- 서울특별시와 공사계약체결 상대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전자계약형태로 계약 체결 요구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기술심사담당관	원안 의결
		- 하도급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 의무 부과			
제174차	7.19.~ 7.26. (서면)	- 법률고문의 위촉 요건 제한	서울특별시 법률고문운영조례	법률지원담당관	원안 의결
		- 공공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자격심사기준을 규모별로 규정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기준	주택정책과	의결 보류 ※제176차 재심
		-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기준 평가항목 변경(경영상태평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공공지원 자원용역 수행실적 항목 신설)			
		- 2022년 상반기 등록규제 정비 결과 보고	-	법무담당관	기타
		- 2022년 상반기 등록규제 심사(시민청 대관 허가 신청 후 대관기본계획서 추가제출 규정)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민소통 담당관	의결보류
제175차	9.20.~ 9.22. (서면)	-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추천 대상자 선정	-	법무담당관	기타
제176차	11.22. (대면)	-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평가항목 변경(유사용역 수행실적에 '공공지원 자원용역' 수행실적 항목 신설)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기준	주택정책과	개선 권고
제177차	12.21.~ 12.23. (서면)	- 계약상대자의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기술심사담당관	개선 권고
		- 공사과정 중 중요 공정 등에 대하여 동영상 촬영 의무 부과 및 동영상 촬영 계획 수립 의무 부과			